

의안번호	2209391
의 퇴 인	신영대 의원
회 답 일	2025.4.10.
추계번호	25E19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를 인하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금소득세수는 2026년 596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3,901억원(연평균 7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대상을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한정된 부분추계 결과로, 실제에 비해 과소 추계 되었을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연금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 제1항)	-596	-677	-768	-871	-989	-3,901	-78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원천징수세율</th></tr> <tr> <th>현 행</th><th>개정안</th></tr> <tr> <td rowspan="2">연금 실제 수령 연차</td><td>10년 이하</td><td>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td><td>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td></tr> <tr> <td>10년 초과</td><td>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td><td>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30%</td></tr> <tr> <td colspan="2">종신계약</td><td><신 설></td><td>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td></tr> </table>	구 분		원천징수세율		현 행	개정안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30%	종신계약		<신 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	
구 분		원천징수세율																		
		현 행	개정안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30%																	
종신계약		<신 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29조제1항(원천징수세율)	○	부분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정기회 중 통과되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
- 추계대상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로 한정
 - 개정안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외 수령형태별 기준을 신설해 종신계약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수령연차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수령형태별 기준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려면 종신계약 여부에 따른 이연퇴직소득 연금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음
- 2023년 기준 연금 실제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고, 향후 세수효과는 2022~2023년 연평균 소득세액 증가율(13.5%)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 ①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②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함
-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추후 연금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음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의 70% 또는 60%임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이를 인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일시금, 중도인출 등)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

[표 2]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 분		원천징수세율	
		현 행	개정안
연금 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5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30%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신 설>	연금외수령 가정 시 원천징수세율의 10%

나. 추계 방법

- 2021~2023년간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기준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인원은 17만 4,159명,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액은 1,355억원이고, 10년 초과인 인원은 903명,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액은 1.3억원임

[표 3]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96,891	13,170	899	130,492	17,526	1,194	174,159	20,919	1,355
	10년 초과	304	17	0.3	468	25	1	903	52	1.3
계		97,195	13,182	900	130,960	17,550	1,195	175,062	20,971	1,356

주: 위 자료는 연금수령형태(종신계약 여부)별 실적이 구분되지 않은 자료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년 기준 388억원으로 추계

-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구간은 원천징수세율이 연금외수령의 70%에서 50%로 현행 대비 5/7으로, 10년 초과 구간은 60%에서 30%로 현행 대비 3/6으로 감소하므로 각 구간별 소득세액도 비례하여 감소

[표 4]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 2023년
(단위: 명, 억원)

구 분		인원	연금지급액	소득세액		세수효과 (B-A)
				현행(A)	개정안(B)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174,159	20,919	1,355	968	-387
	10년 초과	903	52	1.3	0.7	-0.7
계		175,062	20,971	1,356	968	-388

주: 위 자료는 연금수령형태(종신계약 여부)별 실적이 구분되지 않은 자료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이후 세수효과는 2022년 대비 2023년 소득세액 증가율(13.5%)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2022년 4월부터 개인형 IRP계좌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등 최근의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 이후 실적치 활용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금소득세수는 2026년 596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3,901억원(연평균 7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대상을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한정된 부분추계 결과로, 실제에 비해 과소 추계 되었을 수 있음
 - 연금 수령형태(종신계약 여부)별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자료 습득의 한계로 부분추계 실시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연금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 원천징 수세율 인하(제129조 제1항)	-596	-677	-768	-871	-989	-3,901	-78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